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제5호”를 “제6항”으로, “성과 등을”을 “성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를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거나 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을 “제9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따라”를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거나 제7항에 따라”로, “협의하여”를 “협의하여 지정 종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을 “지정 및 운영 등”으로 한다.

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정을 연장하거나 지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지정 취소에”를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종료에 관한 사항

제105조의7 중 “제91조의3제6항”을 “제91조의3제7항”으로, “취소하려면”을 “취소하거나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려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 ⑤ (생략)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정을 연장하거나 지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⑦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 제6항-----
----- 성과를 -----

-----.

⑨ -----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거나 제7항에 따라 -----.

⑩ -----
제9항에 따른 -----

-----.

⑪ -----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거나 제7항에 따라 --- 협의하여 지정 종료 또는 -----

-----.

⑫ ----- 제11항-----

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생략)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 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지정 및 운영 등-----
-----.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

----- 등에 -----

-----.

1. (현행과 같음)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종료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7(청문) -----

-- 제91조의3제7항-----

----- 취소하거나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종료하려면 ---.